

#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규정

제정 2012. 10. 1.   전문개정 2013. 3. 1.  
개정 2013. 7. 1.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와 우리 대학 학칙 제25조에 의거 대경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” 이라 한다.)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산업체의 범위)** 산업체위탁교육에 있어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
2.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및 방송국
3.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
4.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
5.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
6. 직업군인
7. 상시 5인 이상 고용산업체(근로기준법 제10조)
8.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
9. 기타 관할청장이 정하는 사항

**제3조(위탁형태)** 단독위탁과 연합위탁으로 구분하며, 산업체 대표와 우리 대학 총장과의 위탁교육계약에 의하여 입학전형한다.

**제4조(설치학과)** 우리 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한하여 설치·운영한다.

**제5조(학생 수 및 학급편성)** ① 모집학생 수는 관할청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다.

② 학급편성은 20명 이상의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10% 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)** ① 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우리 대학 학칙 및 학사내규에 의한다.

② 위탁생이 위탁산업체의 동의 없이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할 수 있다. 단, 위탁산업체의 도산·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7.1.>

**제7조(위탁생의 선발기준)** ① 위탁생의 선발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13.7.1.>

- ② 위탁생은 위탁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아 우리 대학에서 정한 입학전형 절차에 의거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위탁생은 재직 중인 산업체와 관련 있는 학과나 담당업무와 성격이 같거나 유사한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.

**제8조(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설치 운영)** ① 위탁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을 당연직하며 위탁산업체 임직원 및 우리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1/2이상 포함하도록 한다. <개정 2013.7.1.>

③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3.7.1.>

1. 위탁의뢰산업체 적부에 관한 사항
2. 위탁생의 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
3.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력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
5. 학교와 산업체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탁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

[제목개정 2013.7.1.]

**제9조(시행세칙)** 위탁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할청의 운영지침과 우리 대학 학칙·학사내규 및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운영결과에 따른다. <개정 2013.7.1.>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